

국제한국사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국제한국사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Historical Studies)라 하며, 영문약칭은 IAKHS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세계의 거시사적 흐름과 한국의 지역사적 흐름을 접목하고, 여러 국가와 지역 역사연구자들의 다양한 관점과 방법론을 개방적 태도로 수용함으로써 한국의 역사학과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사업) 이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서적, 학회지, 자료집 및 뉴스레터의 발간
2. 학술회의, 정기발표회, 워크숍, 집담회 등 개최
3. 세계 각 지역 한국역사 연구자들 간의 학술 교류
4. 신진 연구자의 발굴과 지원
5. 세계 각 지역 한국역사 연구자 데이터베이스화
6. 기타 학회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 및 활동

제4조(본부의 소재지) 본 학회의 본부는 운영위원회의 소재지인 한국의 서울에 둔다.

제5조(지부) 세계 각지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각 지역의 대표적인 한국사연구단체가 지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종신회원, 정회원, 준회원, 기타 회원으로 구분한다. 종신회원과 정회원은 세계 각지에서 한국역사 또는 관련 학문분야를 전공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회원은 한국역사 또는 관련 학문분야를 전공하는 학부생 및 동등 학력인정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의무)

1. (권리) 본 학회의 종신회원과 정회원은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학회지와 뉴스레터를 받을 수 있으며,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2. (의무) 연회원은 회비를 매년 기준 납입 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불명예로운 학술활동으로 본회에 누를 끼친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3. (탈퇴) 회원은 총무위원회에 문서 또는 이메일을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의장단) 의장단은 본 학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각 지역별 공동대표들로 구성된다. 상임공동대표는 원칙적으로 한국측 공동대표가 된다.

제9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본 학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며, 상임공동대표와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10조(위원회) 본 학회에는 총무위원회, 국제위원회, 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는 위원들 가운데서 선임된 위원장(1인)과 간사(1인)를 둔다.

제11조(감사) 본회는 2인의 감사를 둔다.

제12조(자문위원회) 본회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공동대표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동의하에 선임하며, 본회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자문을 한다.

제13조(임원 선출)

1. 본회를 대표하는 상임공동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각 지역 공동대표, 각 위원회 위원장은 상임공동대표가 총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은 각 위원장의 추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공동대표가 임명한다. 각 위원회의 간사는 각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각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각 위원장,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상임공동대표) 상임공동대표는 본 학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과 사업을 총괄한다.

제15조(각 위원회의 업무)

1. 총무위원회는 본 학회 각 위원회 업무의 조정, 회계, 문서 및 회원관리, 각종 실무회의의 준비와 연락을 담당한다.
2. 국제위원회는 각 지역의 학회, 잡지발간, 학술서 발간 등 한국사학계의 연구와 학술동향을 파악하고, 지역별 공동대표 및 회원들 간의 연락과 교류, 자료교환, 각 지역 한국사 연구자의 발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3. 연구위원회는 본 학회의 국제학술회의, 정기 학술발표회, 연구모임 등의 학술행사와 연구관련 업무의 기획 및 조직을 담당한다.
4. 편집위원회는 학술서적, 학회지, 자료집 및 뉴스레터 등의 기획, 편집, 발간업무를 담당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과 저술의 발표 및 출판과 관련된 학문적 윤리 문제를 담당한다.

제16조(감사) 감사는 본 학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회의

제17조(회의) 본 학회의 회의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로 구성된다.

제18조(총 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2.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위임회원 포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상임공동대표가 결정한다.
3. 임시총회는 상임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이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상임공동대표는 요청일로부터 2주 이내(공휴일 제외)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2.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 결산의 승인

5. 기타 학회활동이나 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2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1. 운영위원회는 9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상임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는 출석위원(위임위원 포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상임공동대표가 결정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의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사업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항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2조(수입)

1. 본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회비(평생회비, 연회비), 신입회원의 입회비, 기금, 연구비, 찬조금, 후원비, 출판 수입,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23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사업예산의 편성과 승인) 본회의 사업예산은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에 각위원회의 제안을 종합·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본 학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재적 회원(위임회원 포함)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2. 이 회칙은 2009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된 회칙은 개정 직후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5.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개정(1차): 2010년 8월 28일